적립식예금약관

제1조 적용범위

- ① 적립식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지급시기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 저축금의 입금

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이자 및 만기지급금과 지연입금

- ①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마다 입금일 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(이하 '원금'이라 한다)에 더한 금액(이하 '계약금액'이라 한다)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.
- ③ 거래처가 월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에 게시한 입금 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수 있습니다.
-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합니다.

제5조 만기앞당김 지급

거래처가 모든 회 차의 월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에 게시한 만기앞당김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.

제6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

①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-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 저축금마다 입금일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 차의 월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 2 항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8조 자유적립식예금 특례

-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
- ②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마다 입금일 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
- ③ 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, 제4조 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5조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 8조 법령위반 시 처리

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,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케이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